

## 석좌교원 임용 규정

제 정	:	2005. 8. 16.
개 정	:	2012. 1. 1.
개 정	:	2015. 8. 1.
개 정	:	2018. 8. 31.
개 정	:	2025. 8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함) 석좌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)** ① 석좌교원이라 함은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탁된 기금, 본 대학교에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한 과실금이나 교비지원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.

② 석좌교원 임용대상자는 국내외적으로 연구업적이 탁월 하거나 관련분야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국내외의 학자로 한다.

**제3조(직위)** 석좌교원의 직위는 석좌교수로 한다.

**제4조(임용기간)** 석좌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을 포함하여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5조(임용절차)** ① 석좌교원은 근무할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② 해당 부서장은 석좌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다음의 제반 서류를 임용 1개월 이전까지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1. 이력서
2.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

**제6조(재임용)**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석좌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임용기간 중 해교 행위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 단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7조(보수)** 석좌교원의 보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8조(복무)** 석좌교원은 교과목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,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를 한다.

**제9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